

**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
신용사업 취급범위**(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)

1. 취급범위에 관한 기본기준

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신용사업 (「은행법」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취급범위는 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로 한정한다. 이 경우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2.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

신용사업업무의 종류		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
가. 수신 업무	○저축성예금(기한부 거 치식 또는 적립식예금 등)업무	○신규개설 및 만기일 연장을 제외한 업 무
	○요구불예금 업무	○신규개설 및 기존의 요구불예금을 출금 계좌로 하는 약정을 제외한 업무. 다만, 저축성예금으로의 자동이체 등 다른 신 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가 피한 범위로 한정한다
	○당좌·가계당좌 및 자 기앞수표 업무	○신규교부 및 발행을 제외한 업무
나. 여신 업무	○대출업무	○신규대출 및 대출금 기한연장을 제외한 업무
다. 대리 업무 및 기타 업무	○국고대리점업무·국고 수납업무 및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업무·지방 세수납업무	○신규 및 연장계약을 제외한 업무
	○중앙회 대리업무	○중앙회의 업무대리 및 위탁계약에 의하 여 계속적으로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
	○그 밖의 신용사업 업무	○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 관리업무